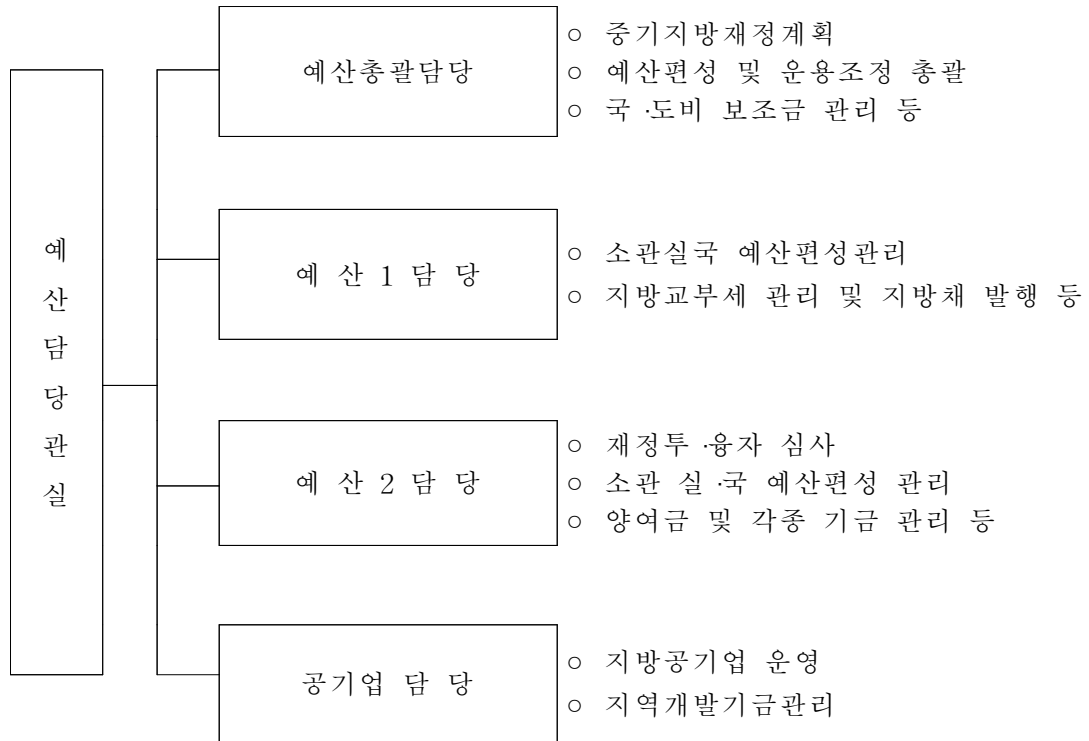


<업무보고 : 예산담당관실>

I. 조 직 과 기 능

☐ 기구 및 기능



☐ 직급별 정원 : 23 명

5급 이상 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5 명	17 명	1 명

II.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용의 기반을 구축
-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 이행을 확행하고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지방재정의 여건

- 국내외의 경기가 점차 호전되고 있어 지방세수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frac{\text{최근5년간}}{20.1\%} \Rightarrow \frac{'97\text{년}}{8.1\%} \Rightarrow \frac{'98\text{년}}{\triangle 17.3\%} \Rightarrow \frac{'99\text{년}}{5.2\%}$$

-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도로·하천 등 각종 SOC 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절실

□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시책추진

- '99 예산절감 건축재정 운용 및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도입 실시

⇒ 절감예산분 51억원으로 실업대책 재원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투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사업관련 예산의 조기 배정 ('99. 1 ~ 6월)

⇒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신용보증조합출연금 및 투자사업 예산 등 예산현액의 74% 조기배정

- 투자사업의 「선보상·후공사비」 예산편성 확행

⇒ 예산의 사고이월 및 미집행 발생 사전 예방

- 대규모 투자사업 현지확인 및 외청, 사업소 건전재정 운용 지도를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99. 6~7월)

⇒ 우수 외청, 사업소 인센티브 부여 (2000년 예산에 반영)

- 2000년도 재정운용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 예산편성 정책토론회 개최('99. 8. 26)
- 시·군 부시장, 부군수 예산협의회 개최('99. 9. 16)

-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추진

- 현행 13.27%에서 17%로 상향조정

⇒ 행정자치부에서 17%로 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99. 7. 27 입법예고하였으나 15%로 조정되어 추진중에 있음

□ 앞으로의 재정운용 계획

-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효율성 증진

- 관행적 비능률적인 예산절약 및 재정운용의 경영마인드 도입
-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유도 및 재원 투입성과 제고

-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2000년 예산 편성

-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 투자사업예산의 편성체계를 성과분석이 용이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주의형」 예산구조로 전환(조직별→사업목적별)

지방재정운용 제도 개선

- 지방재정운용제도 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기조 정착

- 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알권리 충족과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 제도개선 개요

- 결과중심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 (사업예산 4개 분야)
- 일반회계 복식부기제도 도입 추진 (200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도입)

☐ 추진상황

- 결과중심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반영 : 2000년도 예산
 - 하수종말처리장, 하천개수,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 일반회계 복식부기제도 도입 추진(부천시)
 - '99. 3. 5 : 공동과업지시서 작성
 - '99. 4. 6 : 복식부기제도 도입 연구용역 원가계산
 - '99. 7. 18 : 적격심사서 작성 및 승인 (행자부, 재경부)
 - '99. 11. 5 : 용역적격업체 선정

☐ 향후계획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복식부기제도 도입
 - '99. 12~2000. 6 : 일반회계 복식부기제도 연구용역
 - 2001. 1 ~ 12 : 일반회계 복식부기제도 시범 실시(부천시)
 - 2002년 부터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복식부기제도 도입

투자심사기능의 강화

-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 강화로 투자효과 극대화
- 지방재정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로 재정의 계획화·효율화 도모

☐ 심사제도 개요

- 심사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편성시 투자심사결과 반영)
- 대 상
 -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도 심 사 - 도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시 ·군 : 총사업비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시 ·군 자체심사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추진상황

- 합리적인 투자심사기법 개발을 위한 교육실시 : 2회 119명
- 각종 지방재정제도와의 연계 강화
 - 국 ·도비 보조 신청, 양여금사업 신청, 지방채 발행 등
- 투자심사기능의 강화
 - '99투자심사결과 : 총 63건(적정 16, 조건부 인정 42, 재검토 5)
⇒ 적정, 조건부 인정사업 2000년도 예산에 반영, 재검토 사업에 대하여는 2000년
도 재심사

☐ 향후계획

- 합리적인 투자심사기법 개발 및 제도개선
- 추진상황분석 전산화로 사후관리 강화

시 ·군 재정운용의 건전화

- 불건전 재정운용의 시정 및 개선방안 마련
- 재정운용 분석을 통한 건전 재정 기틀 마련

☐ 기본방침

- 지방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방향 설정
- 재정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의 이행실태 확인 ·지도
-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재정분석 ·진단실시

☐ 추진실적

- 시 ·군 예산편성운영실태 점검분석 : '99. 6. 14~6. 26 (10일간)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연계 미흡: 9개사업 108억원

- 투자자심사 미이행사업 예산편성: 14개사업 189억원
- 지방채 미승인사업 예산편성: 8개사업 252억원
- 교육관련경비 미승인 예산편성: 11개학교 0.8억원
- 국·도비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부적정 : 75개사업 411억원

○ 점검결과 조치지시 및 개선방안 시달 : '99. 7. 13

□ 향후계획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교육·연찬회 정례화 추진
- 재정분석·진단기법의 개발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각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관리·운용체계 구축
- 조성된 자금을 고유목적에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본현황

- '99 조성 총규모 : 12종, 1조 2,254억원('99. 9월말 현재)
 - 용자기금(4종) : 1조 1,149억원
 - 식품진흥(383), 환경오염방지(157), 농업발전(520), 중소기업육성(10,089)
 - 사업 및 관리기금(5종) : 333억원
 - 농촌지도자육성(44), 체육진흥(104), 여성발전(21), 노인복지(55), 청소년육성(109)
 - 적립기금(3종) : 772억원
 - 지방채상환재원적립(220), 재해대책및재난관리(209), 사회복지(343)

□ 추진실적

- 기금관련조례 정비·보완 : 2건
 - 노인복지기금조례 개정('99. 7. 19), 청소년육성기금조례개정 추진 중('99. 11월 예정)

○ 도 및 시·군 예산·회계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80명('99. 10. 1)

○ 신규기금설치 억제

- 환경보전기금설치 요구 ⇒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기금에 통합조치

□ 향후계획

○ 기금관리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검토

○ 기금담당공무원 실무교육 및 기금운용실태 평가분석의 지속적 추진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복리 증진 도모

□ 기금 총규모 : 16,957억원(융자금 15,054, 현금 1,903)

□ '99 운영(조성) 실적('99. 10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조 성					지 출				비 고
	계	공채 매출	융 자 원리금	예금 이자	이월금	계	기금 융자	공채 상환	기금관 리비등	
계 획	5,964	2,300	3,362	108	194	5,964	3,137	2,775	52	
실 적	3,926	1,963	1,722	47	194	2,923	829	2,093	1	
(%)	65.8	85.3	51.2	43.5	100	49.0	26.4	75.4	1.9	

☐ 향후계획

- 기금융자금 회수 : 1,640억원(원금 1,025 이자 615)
- 기금융자대상단체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융자조치 : 26개 단체 2,959억원
- '94년이전 발행 공채원리금 상환 : 687억원(원금 507, 이자 180)

지방공사의료원 운영

- 지역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의료시설의 운영
- 의료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 측면의 공공의료 기능 수행

☐ 현 황

(단위 : 백만원, 병상, 명)

구 분	계	수 원 의료원	의정부 의료원	금 춘 의료원	이 천 의료원	안 성 의료원	포 천 의료원
설립일자		88.11.15	83.7.1	83.11.1	83.7.1	83.7.1	87.1.1
자 본 금	8,882	1,190	1,198	1,239	1,837	1,778	1,640
병 상 수	910	132	218	160	75	161	164
정 원	749	122	141	142	90	110	144

☐ 추진실적

- '98년도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 의료원별	수 원	의정부	금 춘	이 천	안 성	포 천
당기 순손실	△313	△270	205	△53	△83	471

○ 구조조정 추진실적

의료원별 구 분	계	수 원	의정부	금 춘	안 성	포 천
기구축소	7개 과 폐지	경리과 피부과 비뇨기과 폐지	경리과 폐지	경리과 폐지	경리과 폐지	경리과 폐지
인력감축 (2000.12.31 까지 총96명 감축계획)	62	12	18	9	15	8
제도개선	6개분야 개선	명예퇴직제, 조기퇴직제, 퇴직금2단계누진제, 연봉제, 간호사직급제, 정년단축(1년)등 시행				

○ '99. 9월까지 진료실적 : 수입 32,588백만원(입원 18,405, 외래 14,183)
인원 669,170명(입원 209,525, 외래 459,645)

○ 이천의료원 위탁운영성과

⇒ '97년도 당기순손실 841백만원에서 '98년도 당기순손실 53백만원 발생으로 '97
년대비 788백만원 경영개선

○ 수원의료원 위탁운영추진-수도권 대학병원 또는 7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 위탁운
영

⇒ 대상기관에 제안서 교부 및 접수 후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

□ 향후계획

○ 의료서비스 향상 및 공공진료기능의 확충

⇒ 건강강좌 및 건강상담실 운영,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 지방공사의료원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지속추진

⇒ 2000년 인력 조정(34명)

○ 의료원시설 증·개축으로 진료환경 및 경영개선

- 병 상 증 축 : 이천의료원(34병상), 의정부의료원(100병상)
- 영안실 증축 : 수원의료원(지하100평)

'98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처리결과

관리번호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98-3	<시정요구사항> ○ 경기도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운용상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하는 서식 등이 복잡하고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니, 공개서식 등을 변경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경기넷 「재정현황」에 서식 변경 공개 ○ 경기도의 살림살이 홍보책자 발간 배부 : 3,000부 ○ 경기도재정운용상황공개에관한조례 시행규칙 개선 검토중 (추진중)
98-8	○ 각종기금의 방만한 운용으로 기금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바람, 가급적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 등 기금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바람	○ '98기금통·폐합관리 : 17→12종(△5종) • 기금운용 실태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시달 : '99. 4. 10 - 기금조례정비, 용자사업증대, 기금예치의 안정성 및 고이율 추진 • '99신규기금 설치 억제(2종) - 외국인투자유치지원기금, 환경보전기금 설치 유보 • 자치단체 관리기금 개선지침 시달 : '99. 9. 15 -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동시행규칙안 (완 료)
98-9	○ 지방공사의료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임원들의 인사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구조조정 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인사방침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 지방공사 의료원의 자율책임경영제를 확립하고자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공사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중전의 규정에는 직원에 한하여 인사교류토록 한 규정을 진료부장 및 관리부장을 포함하여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동조례 제 37조를 개정하였으며, 추후 인사교류요인 발생시 동규정에 의거 인사교류코자 함 (완 료)
98-10	○ 시·군간의 재정자립도가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교부세나 양여금제도, 그리고 시·군보조금의 차등제도를 통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람.	○ 교부세 등은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써 재정력 격차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도비보조금은 시·군의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 운용하고 있음 (완 료)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98-23	○ 각 의료원에서 의약품 구입 관리 하면서 실제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등 의약품 관리에 소홀하고 있음 ○ 향후 실제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의료원 공통)	○ 구매와 검수를 분리, 운영하여 약품 구입 단계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완 료)
98-24	○ 의료원에서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각각 구입함에 있어 의료장비의 경우 동종의 의료장비 구입가격이 의료원 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의약품의 경우도 품목별 구입단가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등 문제점이 있으니, 공동구매 시스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의료원 공통)	○ 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제31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 또한 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계약을 체결, 공동구매방법도 시행하고 있음 (완 료)
98-27	〈건의사항〉 ○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관련법규나 조례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 조치 (완 료)
98-28	○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규모가 상향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니 대상사업의 규모를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기 바람	○ '98. 12. 31 행자부 건의 • 건의내용 : 자부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개정안에 반영('99. 4. 6) • 도심사 - 도 20억원이상, 시군 20억원이상 → 50억원 이상 • 중앙심사 : 100억원이상 → 200억원이상 (완 료)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98-35	○ 의료를 포함한 병원의 의료사고는 병원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의료사고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의료원 공통)	○ 병원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회에 가입, 의료사고에 사전 대비하고 있음 (완 료)
98-36	○ 의료원은 현재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너무 수익성 측면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공공성에 중점을 두어 의료원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바람(의료원 공통)	○ 수익성 향상 및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의료서비스 부문에 대한 사회기여도를 평가하여 경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음 (완 료)